A101
S3
V.09

1984. 7.

政府管理糧穀 保管料 및 包裝賃調査

朱 龍 宰(研究委員)
尹 錫 元(研 究 員)
金 辰 洙(研 究 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RP 7574

目　　次

Ⅰ. 調査의 目的 및 概要

1. 調査目的 …… 1
2. 調査內容 …… 1
3. 調査對象 選定 …… 2

Ⅱ. 原價調査 및 計算方法

1. 原價調査方法 …… 6
2. 原價計算方法 …… 7

Ⅲ. 調査結果

1. 保管原價 …… 12
2. 合成樹脂袋 包裝原價 …… 17

附錄 1. 保管原價算出 根基資料 …… 19
附錄 2. 標本倉庫의 施設現況 및 倉庫利用率 …… 20
附錄 3. 保管關聯 參考資料 …… 26

表 目 次

表 1 政府糧穀 保管倉庫 現況 (1983.12) …… 2
表 2 級地別,所有者別 標本數 및 標本抽出 比率 …… 3
表 3 合成樹脂袋 調査業體의 地域別, 規模別 分布 …… 4
表 4 合成樹脂袋 包裝賃 調査業體 …… 5
表 5 標本調査業體의 1983 年度 倉庫利用率 …… 12
表 6 級地別, 所有者別 代案設定 …… 13
表 7 甲地倉庫所有者別 保管原價 內譯 …… 14
表 8 乙地倉庫所有者別 保管原價 內譯 …… 15
表 9 所有者別, 級地別 保管原價 …… 15
表 10 倉庫利用率別, 級地別 保管料 …… 16
表 11 合成樹脂袋 包裝原價 調査結果 要約 …… 17
表 12 合成樹脂袋 包裝原價 內譯 …… 18

附表 1 - 1 . 소라단협 100 坪當 倉庫新築費 內譯 …… 19
附表 1 - 2 政府糧穀保管倉庫의 備品減價償却內譯 …… 19
附表 1 - 3 民間倉庫 (甲地)의 支給利子 再評價內譯 …… 20
附表 2 - 1 標本農協倉庫 (甲地)의 施設現況 …… 20
附表 2 - 2 標本農協倉庫 (乙地)의 施設現況 …… 21
附表 2 - 3 標本民間倉庫의 施設現況 …… 22
附表 2 - 4 標本通運倉庫의 施設現況 …… 22
附表 2 - 5 標本民間倉庫의 倉庫利用率, 1983 …… 23
附表 2 - 6 標本農協倉庫 (甲地)의 倉庫利用率, 1983 …… 23
附表 2 - 7 標本農協倉庫 (乙地)의 倉庫利用率, 1983 …… 24

附表 2 - 8　標本通運倉庫의 倉庫利用率, 1983 …… 25
附表 3 - 1　政府糧穀保管倉庫의 保管能力 推移 …… 26
附表 3 - 2　政府糧穀保管倉庫 現況 …… 26
附表 3 - 3　年度別 政府糧穀保管倉庫 利用率 …… 27
附表 4 - 1　40 kg袋 實測包裝量 및 直接勞務費 屯當 原單位 …… 27
附表 4 - 2　60 kg袋 實測包裝量 및 直接勞務費 屯當 原單位 …… 28
附表 4 - 3　消耗材料(실)의 屯當 原單位 實測結果 …… 28

I
調査의 目的 및 概要

1. 調査目的

本調査의 目的은 政府糧穀管理費의 比較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政府管理糧穀保管料 및 合成樹脂袋 包裝賃의 적정한 原價算定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있음.

2. 調査內容

가. 保管料 原價調査

保管原價는 1983년도를 調査對象年度로 하여 級地別(甲地, 乙地)로 保管原價를 算出하였다. 여기서 甲地는 특별시, 직할시, 道廳所在地 및 港口地(동해, 마산, 울산, 여수, 목포, 군산, 장항) 등이 포함되며, 乙地는 위 地域以外의 其他地域을 가리킨다.

나 包裝賃 原價調査

包裝賃은 1983년도를 對象年度로 하여 合成樹脂袋 40 *kg*包裝과 60 *kg* 包裝의 原價를 調査하였다.

3. 調査對象 選定

가. 保管 原價調査

1983년 12월말현재 2級以上 政府糧穀保管倉庫는 7,598棟으로서 甲地倉庫가 5.1%인 371棟, 乙地倉庫가 94.9%인 7,227棟으로 구성되어 있다〈表1〉. 所有者別로 보면 農協所有倉庫가 64.2%인 4,875棟으로 大宗을 이루고 있고 民間所有倉庫 2,612棟(34.4%), 通運所有倉庫 94棟(1.2%), 政府所有倉庫 17棟(0.2%)의 순이다.

本調査에서 選定된 標本倉庫數는 178棟으로 標本抽出比率은 2.4%였다. 本標本은 級地別(甲地, 乙地) 所有者別 分布와 調査可能性 등을 감안하여 選定하였으며 級地別, 所有者別 標本의 分布는 〈表2〉와 같다. 즉, 農協所有倉庫는 134棟(甲地 29棟, 乙地 105棟), 民間所有倉庫 21棟(甲地 11棟, 乙地 10棟), 通運所有倉庫 23棟(甲地 11棟, 乙地 12棟)을 임의 선정하였다.

級地別 標本抽出比率을 보면 甲地가 13.7%(51棟), 乙地가 1.8%(127棟)이었고, 所有者別 標本抽出比率은 農協이 2.7%(134棟), 民間倉庫 0.8%(21棟), 通運이 24.5%(23棟)이었다.

表1 政府糧穀 保管倉庫 現況(1983. 12)

單位 : 棟

級地別 \ 所有者別	政府	農協	民間	通運	全體	構成比(%)
甲地	5 (1.3)	80 (21.6)	255 (68.7)	31 (8.4)	371 (100.0)	5.1
乙地	12 (0.2)	4,795 (66.3)	2,357 (32.6)	63 (0.9)	7,227 (100.0)	94.9
計	17 (0.2)	4,875 (64.2)	2,612 (34.4)	94 (1.2)	7,598 (100.0)	100.0

表 2　級地別, 所有者別 標本數 및 標本抽出 比率

所有者別 \ 區分 \ 級地別		甲地	乙地	計
농협 (單協數)	모집단 (A)	25[1] (80)	1,415 (4,795)	1,440 (4,875)
	표본수 (B)	12 (29)	24 (105)	36 (134)
	표본추출비율 % (B／A)	48.0	1.7	2.5
		36.3	2.2	2.7
민간 (倉庫主數)	모집단 (C)	115 (255)	1,131 (2,357)	1,246 (2,612)
	표본수 (D)	6 (11)	5 (10)	11 (21)
	표본추출비율 % (D／C)	5.2	0.4	0.9
	(D／C)	4.3	0.4	0.8
통운 (支店 및 出張所數)	모집단 (E)	12 (31)	39 (63)	51 (94)
	표본수 (F)	4 (11)	7 (12)	11 (23)
	표본추출비율 % (F／E)	33.3	17.9	21.6
		35.5	19.0	24.5
전체[2]	모집단 (G)	152 (371)	2,585 (7,227)	2,737 (7,598)
	표본수 (H)	22 (51)	36 (127)	58 (178)
	표본추출비율 % (H／G)	14.5	1.4	2.1
		13.7	1.8	2.3

1) (　)內는 棟數임.
2) 전체중 (　)內의 棟數에는 정부소유창고 포함.

이와 같이 農協과 通運倉庫의 標本抽出比率이 民間倉庫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높게 策定된 것은 이들 倉庫는 帳簿整理가 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한 記帳調査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民間倉庫는 대부분 帳簿整理를 하지 않는 관계로 비교적 帳簿整理가 잘 되어 있고 調査協助가 용이한 倉庫를 對象으로 하였다.

倉庫所有主는 대부분 몇개의 倉庫를 保有하고 있으며, 全體倉庫에 대한 費用을 기록하는 관계로 個別倉庫에 대한 保管原價調査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標本抽出單位는 個別倉庫 대신 所有主 單位로 하여 標本을 選定하였다. 예컨대 農協倉庫의 경우 倉庫運營은 單協單位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單協의 母集團으로부터 標本單協을 任意選定하였고 그 單協이 所有하고 있는 倉庫를 對象으로 保管料原價를 調査하였다. 民間倉庫와 通運倉庫의 標本選定에 있어서도 所有者單位로 즉, 所有者의 名單으로부터 標本業體를 任意抽出하였다.

위와 같이 選定된 調査對象業體의 倉庫保有現況은 〈附表 2-1～2-4〉

表 3 **合成樹脂袋 調査業體의 地域別, 規模別 分布**

단위 : 個所

市 道 別	工場數	規模別[1]				
		特 大	大	中	小	計
서 울	8	1				1
부 산	12					
대 구	7					
인 천	8					
경 기	45	1				1
강 원	22					
충 북	28					
충 남	52					
전 북	50		1			1
전 남	83		1	1	1	3
경 북	89			2		2
경 남	74				2	2
제 주	1					
計	479	2	2	3	3	10

1) 精米加工能力 기준(特大 : 80톤 이상, 大 : 40～79톤, 中 : 26～39톤, 小 : 25톤 이하)

와 같다.

나. 合成樹脂袋 包裝原價調査

(1) 政府糧穀搗精工場 479개소중 地域別, 規模別分布를 감안하여 〈表 3〉과 같이 10個業體를 선정하였다.

(2) 合成樹脂袋 包裝賃 調査業體

上記 節次에 따라 選定된 政府糧穀搗精工場의 規模別, 地域別 分布는 〈表 4〉와 같다.

表 4 合成樹脂袋 包裝賃 調査業體

規模別	工場名	舊精米加工能力	工場所在地
小	군북	21 (M/T)	경남 함안군
	대동	21	〃 김해군
	광진	21	전남 구례군
中	대림	30	전남 승주군
	영신	27	경북 영천군
	화원	36	〃 달성군
大	고흥	48	전남 고흥군
	신태인	60	전북 정읍군
特大	평택	100	서울시
	부천	130	경기 부천시

Ⅱ
原價調査 및 計算方法

1. 原價調査方法

가. 保管 原價調査

保管原價調査는 1983年度를 對象期間으로 하여 標本業體에 대한 郵便調査와 現地調査를 竝行하였다.

保管費用에 대한 記帳이 잘 되어 있는 農協所有倉庫에 대해서는 郵便調査를 실시하였다. 즉, 調査表를 해당 單位組合에 送付하여 倉庫擔當者로 하여금 記載토록 하는 동시에 記載事項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關聯證憑資料를 첨부토록 하였다. 또한 本 調査表의 分析過程에서 不合理하거나 證憑資料가 不足한 事項에 대해서는 補完調査를 實施하였다.

한편, 民間所有倉庫와 通運所有倉庫에 대해서는 現地出張하여 記帳調査를 하였으며 특히, 乙地倉庫의 경우 規模가 영세하여 關係帳簿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倉庫에 대해서는 聽取調査도 竝行하였다.

나. 合成樹脂袋 包裝原價調査

包裝費 原價調査에 의거 直接 原單位를 測定할 수 있는 原價項目(直接投入人員, 消耗材料)은 實測調査에 의하였고 其他原價項目은 1983年度를 原價調査對象期間으로 한 實績調査(帳簿 및 聽取調査)에 의하였다.

包裝賃原價에는 製品計量으로부터 包裝製品을 檢査場까지 운반하는데 所要된 모든 費用이 포함된다.

2. 原價計算方法

가. 保管原價 計算基準

保管原價는 貨主가 위탁한 保管物品을 保管, 管理하는데 所要된 財貨와 用役의 經濟價値를 貨幣價値로 표현한 것이다.

本原價調査에서는 倉庫保管料의 構成 要素인 人件費, 經費, 一般管理費, 利潤 및 支給利子등은 아래와 같은 方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1) 人件費

倉庫業務擔當者 및 倉庫管理人의 年間 給與額(상여금포함)에 勤勞基準法에 규정된 範圍內의 退職給與充當金을 포함시켰다.

(2) 警備料

晝·夜間 倉庫警備員의 年間 人件費 또는 當直者에 대한 當直手當支給額을 포함시켰다.

(3) 整理人夫賃

保管糧穀의 自體移庫, 換積作業 및 倉庫內의 청소 등에 所要되는 人件費로서 政府로부터 代價를 支給받지 않는 費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4) 減價償却費

減價償却費의 對象資産은 倉庫建物, 構築物 및 倉庫備品 등이 해당된다. 農協所有倉庫, 甲地의 民間所有倉庫와 通運倉庫 등은 대부분 減價償却費가 記帳되어 있었으며, 本 原價調査에서는 이들 倉庫에 대한 減價償却費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乙地 民間所有倉庫와 通運倉庫는 大部分 減價償却에 대한 資料가 없으므로 아래 方式에 의해 減價償却費를 計算하였다.

○ 倉庫의 新築價格은 本調査에서 入手한 聽取調査의 結果인 100평당 4,000만원을 적용하였다. 한편, 1983年度 전남 여천군

소라단협의 100坪倉庫 新築價格이 4,300만원이었으며 이의 內譯은 〈附表 1 - 1 〉과 같다.

- 備品의 取得價格은 現時價를 調査하여 적용하였으며 備品保有量은 政府糧穀保管管理要領 또는 政府指示公文에 기준하여 算出하였다〈附表 1 - 2 참조〉.
- 對象資產別 耐用年數는 法人稅法에 의하였고 減價償却費 計算方法은 定額法에 의하였다.

(5) 修理費

修理實績에 의하되 資本的 支出에 해당되는 大修理는 修理費에서 제외하였다.

(6) 消耗品費

쥐약, 파나프레이트, 빗자루, 소화기충약 등의 倉庫消耗品과 雜費, 圖書印刷費 및 오물수거료 등이 포함된다.

(7) 水道光熱費, 通信費 및 旅費交通費

水道料, 電氣料, 電話料 및 市內外出張費가 포함된다.

(8) 保險料

火災保險料 支給實績을 기준으로 計算하였다.

(9) 租稅公課金

實支給된 土地財產稅, 建物財產稅, 事業所稅 및 免許稅 등을 포함시켰다.

(10) 支給賃借料

倉庫敷地賃借料를 의미한다.

(11) 一般管理費 및 適正利潤

一般管理費는 倉庫業의 運營 및 管理過程에서 發生하는 諸費用 중 保管原價에 속하지 아니하는 任員報酬, 事務室維持費用, 法人稅 등의 租稅公課金, 車輛維持費 등이 포함된다. 本 原價調査에서 一般管理費는 保管原價의 5%를 一律的으로 적용하였다. 한편, 適正利潤은 財務部의 「原價計算에 의한 豫定價格 作成準則」에 따라 保管原價와 一般管理費를 합한 費用의 10%를 計上하였다.

(12) 支給利子

支給利子는 1983년도에 實際 支給된 利子를 計上하였다. 그러나 支給利子額이 지나치게 과다한 일부 甲地 民間倉庫에 대해서는 韓國銀行의 「1982년도 企業經營分析」에 의거 支給利子를 調整하였다〈附表 1-3 참조〉.

(13) 共通費의 配付基準

農協이나 大韓通運의 경우 倉庫業 이외에 다른 事業(예컨대 金融業, 運輸業)을 兼하고 있으므로 水道光熱費, 通信費, 旅費交通費 등의 共通費用은 事業別로 配分되어야 한다. 大韓通運의 糧穀倉庫部門 共通費用 配付率은 通運總收入중 糧穀倉庫 收入比率에 의하였고, 農協의 糧穀倉庫部門 共通費用 配付率은 아래와 같은 基準에 의거하여 計算하였다.

糧穀倉庫部門配付率=

$$\frac{\dfrac{\text{倉庫從事人員}}{\text{農協總人員}} + \dfrac{\text{倉庫收入}}{\text{農協總收入}}}{2} \times \frac{\text{糧穀倉庫收入}}{\text{倉庫收入}}$$

나. 合成樹脂袋 包裝原價 計算方法

(1) 直接勞務費

○ 實測調査에서 算出한 包裝作業에 所要되는 ㎡當 工數에 工場別 '83年度 實際勞賃支給額(現金支給額+給食費)을 곱하여 計算하였다.

○ 實際 勞賃支給額에는 退職金,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標本調査工場의 慣行에 준하였다.

(2) 消耗材料費

○ 包裝에 所要되는 消耗材料(실, 꼬리표)의 ㎡當 原單位는 實測調査에 의하였고, 이에 基準時點(83년 5월)의 單價(市中市價)를 곱하여 計算하였다.

(3) 減價償却費

包裝部門 減價償却의 對象資産은 計量包裝器, 미싱 및 콘베이어, 저울

등이며 이들 資產에 대한 減價償却費는 아래와 같이 計算하였다.

ㅇ 對象資產의 減價償却費 計算은 定額法에 의하였다.

ㅇ 對象資產의 耐用年數는 法人稅法에 의거 10年으로 計上하였으며 對象資產의 現時價는 市場調査에 의하였다.

(4) 保險料

火災 및 產災保險의 支給實績을 基準으로 計算하였다.

(5) 修理費

機械 및 建物修理 등의 實績修理費를 기준으로 하였다.

(6) 消耗品費

비누, 장갑, 잉크, 고무인, 반창고 등 工場消耗品 使用實績을 기준으로 計算하였다.

(7) 間接勞務費

事務職 및 工場管理職(기사, 기사보 등)의 勞務費는 1983年 1個年間의 人件費 支給實績을 기준으로 計算하였다.

(8) 圖書印刷費

新聞購讀料, 加工 및 包裝日報, 其他印刷物에 대한 支給實績을 기준으로 하여 計算하였다.

(9) 交通, 通信費

電話料, 郵便料 및 出張費 支給實績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10) 水道·光熱費

水道料金 및 光熱費 支給實績을 기준으로 計算하였다.

(11) 租稅公課金

財產稅, 各種免許稅, 오물수거료 등 各種 公課金 支給實績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12) 寄附接待費

방위성금, 체육기금, 예비군보조, 경로회보조 등 寄附金과 來客接待費 支給實績을 기준으로 計算하였다.

(13) 共通費의 配賦基準

製造原價上의 共通費用과 一般管理費의 配賦는 標本調査業體의 1983

年度 總收入(加工, 包裝 및 其他收入)중 包裝收入의 比로 配賦한 다음 그 配賦額을 다시 包裝收入中 合成樹脂袋 規格別(40 *kg*, 60 *kg*) 包裝賃收入의 比로 配賦하였다.

(14) 適正利潤의 算定

適正利潤은 財務部 會計例規 1201-04-105-1에 의거 製造原價와 一般管理費의 合計額의 10%를 計上하였다.

Ⅲ
調 査 結 果

1. 保管原價

가. 標本調査業體의 倉庫利用率

標本倉庫의 1983年度 倉庫利用率은 甲地가 55.6%로 乙地의 75.8%에 비해 약 2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이 標本倉庫의 利用率은 級地別 保管能力을 加重値로 한 同年의 全國平均倉庫利用率 82.0%보다 낮은 수준이다.

表 5 標本調査業體의 1983年度 倉庫利用率 [1)]

單位 : %

소유자별	갑 지		을 지		비 고 (전국평균창고이용률) [3)]
	창고이용률	가중치 [2)]	창고이용률	가중치 [2)]	
농 협	50.8	17.7	71.4	62.6	1981 : 64.9
민 간	59.0	74.6	83.4	36.5	1982 : 77.9
통 운	33.2	7.7	74.3	0.9	1983 : 82.0
계	55.6	100.0	75.8	100.0	

1) 〈부표 2－5～부표 2－8〉 참조.
2) 1983년도 소유자별 보관능력의 가중치
3) 농수산부 推算値임.

나. 原價調査 結果

앞에서 언급한 原價計算基準에 따라 保管原價를 산출하되 一部費用(減價償却費 및 支給利子)에 대한 評價方式에 따라 〈表6〉의 代案에 대한 保管原價를 計算하였다. 〈表7〉은 甲地의 3個代案, 〈表8〉은 乙地의 2個代案에 대한 所有者別 倉庫 100坪當 保管原價를 각각 수록한 것이다.

表6 級地別, 所有者別 代案 設定

所有者別	代案別	甲地		乙地
		減價償却費	支給利子	減價償却費
農協	Ⅰ	記帳値	記帳値	記帳値
	Ⅱ	評價値[1]	〃	評價値
民間	Ⅰ	記帳値	記帳値	評價値
	Ⅱ	評價値	調整値[2]	-
通運	Ⅰ	記帳値	記帳値	評價値
	Ⅱ	評價値	〃	-

1) 감가상각비를 新造價 즉, 現時價로 평가한 경우임.
2) 1982년도 倉庫業의 全國平均 借入金 依存度 29.3%를 적용

甲地農協倉庫와 通運倉庫 그리고 乙地의 農協倉庫의 경우 代案Ⅰ은 해당倉庫에서 調査된 實際減價償却額을 적용한 경우이며, 代案Ⅱ는 現在의 新造價格을 기준으로 評價한 減價償却額을 적용한 경우이다.

甲地民間倉庫의 경우 代案Ⅰ은 實際調査結果이며 代案Ⅱ는 新造價를 기준으로 한 減價償却額을 적용하는 동시에 支給利子를 調整한 경우이다. 甲地의 民間倉庫中에는 年間利子支給額이 100坪當 5,000만원이나 되는 倉庫가 있어 이러한 倉庫의 利子支給額을 조정한 경우이다.

乙地의 民間倉庫와 通運倉庫의 경우에는 減價償却에 대한 資料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현재의 新造價를 기준으로 評價한 減價償却額을 적용하였다.

農協倉庫와 通運倉庫의 경우 減價償却費는 過去의 實際倉庫建築費를 기준으로 計算하고 있다. 그런데 農協倉庫의 경우 1976~78년 사이에 建築된 倉庫가 대부분으로 현재 倉庫建築費는 1976~78年에 비해 약 3배나 상승하였으므로 과거의 實際建築費를 기준으로 계산된 減價償却費는 過少

表 7　甲地倉庫所有者別 保管原價 內譯

單位 : 원(年間)

소유자별 / 대안별 / 비목별	농협 1)		민간 2)		통운 1)	
	Ⅰ	Ⅱ	Ⅰ	Ⅱ	Ⅰ	Ⅱ
인건비	2,022,326	2,022,326	1,744,328	1,744,328	1,689,728	1,689,728
정리인부임	29,984	29,984	171,784	171,784	2,482	2,482
경비료	148,094	148,094	551,415	551,415	375,424	375,424
감가상각비	490,632	958,778	1,118,828	958,778	486,819	958,778
수리비	114,024	114,024	113,993	113,993	89,050	89,050
수도광열비	168,258	168,258	338,534	338,534	87,633	87,633
통신비	53,465	53,465	111,233	111,233	32,672	32,672
소모품비	285,991	285,991	221,206	221,206	101,062	101,062
조세공과금	65,090	65,090	234,264	234,264	217,764	217,764
보험료	36,231	36,231	39,207	39,207	16,414	16,414
여비교통비	34,412	34,412	96,316	96,316	24,664	24,664
지급임차료	-	-	-	-	-	-
소계	3,448,507	3,916,653	4,741,108	4,581,058	3,123,712	3,595,671
일반관리비	172,426	195,833	237,055	229,053	156,816	179,784
이윤	362,093	411,248	497,816	481,011	327,991	377,544
지급이자	209,730	209,730	1,729,362	763,849	104,439	104,439
총원가	4,192,756	4,733,464	7,205,341	6,054,971	3,712,326	4,257,438

1) 대안Ⅰ은 실제조사치를 적용한 경우이며, 대안Ⅱ는 新造價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가상각액을 적용한 경우임.

2) 대안Ⅰ은 실제조사치를 적용한 경우이며, 대안Ⅱ는 新造價格을 기준으로 평가한 減價償却費와 조정한 支給利子를 적용한 경우임.

評價될 可能性이 높다. 따라서 倉庫產業의 長期的인 育成面에서 볼 때 倉庫의 減價償却費는 新造價를 基準으로 評價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倉庫의 特殊性으로 借入金利子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겠으나 이 利子支給額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保管原價算定에 偏倚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실성이 있는 保管原價算定을 위해서는 代案Ⅰ 보다는 代案Ⅱ 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代案Ⅱ 를 채택할 경우 1983년도 所有者別 級地別 保管原價는 아래

表 8　乙地倉庫所有者別 保管原價 內譯

單位 : 원 (年間)

비목별 \ 대안별 \ 소유자별	농협* I	농협* II	민간	통운
인건비	1,498,690	1,498,690	1,746,104	1,420,660
정리인부임	166,221	166,221	17,165	139,617
경비료	77,539	77,539	506,687	211,497
감가상각비	335,363	958,778	958,778	958,778
수리비	79,860	79,860	174,230	145,511
수도광열비	35,048	35,048	33,330	17,754
통신비	42,338	42,338	95,912	81,266
소모품비	220,767	220,767	450,481	258,409
조세공과금	-	-	113,891	174,106
보험료	31,871	31,871	12,384	14,665
여비교통비	77,706	77,706	124,427	93,878
지급임차료	41,407	41,407	9,900	-
소계	2,606,810	3,230,225	4,243,289	3,515,781
일반관리비	130,340	161,511	212,164	175,789
이윤	273,715	339,174	445,546	369,157
지급이자	452,062	452,062	292,489	231,261
총원가	3,462,927	4,182,972	5,193,488	4,291,988

* 表7과 同一

〈表 9 〉와 같다. 所有者別 政府糧穀保管倉庫 坪數를 加重値로 한 100 坪當 年間總保管原價는 甲地가 5,249,534 원, 乙地가 4,586,109 원으로 각각 計算되었다.

表 9　所有者別, 級地別 保管原價 [1]

單位 : 원 (年間)

所有者別	甲地 保管原價	甲地 加重値	乙地 保管原價	乙地 加重値
농협	4,733,464	58.5(%)	4,182,972	58.5(%)
민간	6,054,971	39.7	5,193,488	39.7
통운	4,257,438	1.8	4,291,988	1.8
加重平均 [2]	5,249,534	100.0	4,586,109	100.0

1) 甲地는 〈表7 〉의 대안II, 乙地는 〈表8 〉의 농협의 경우 대안II의 결과임.

2) 1983년도 정부양곡창고 소유자별 평수를 가중치로 한 平均保管原價임.

다. 倉庫利用率別 톤당 保管料率 算定

保管料率은 倉庫業者가 寄託者의 의뢰에 의해서 貨物을 保管함에 있어 倉庫設備의 사용과 保管責任에 대한 보수를 합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倉庫保管料는 단순히 原價報償의 차원뿐만 아니라 倉庫業者의 선량한 管理를 誘導할 수 있는 水準에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業인 倉庫業의 原價要素는 變動費的 性格이 거의 없고 保管物量의 많고 적음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固定費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保管料率은 總保管原價 뿐만 아니라 倉庫利用率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表10 倉庫利用率別 級地別 保管料

單位 : 원／톤

倉庫利用率	甲 地		乙 地	
	1일보관료율[1]	현행대비증감률[2]	1일보관료율[1]	현행대비증감률[2]
40 (%)	76.50	55.1 (%)	66.83	43.60 (%)
50	61.20	24.1	53.47	14.89
60	51.00	3.4	44.56	△ 4.3
70	43.72	△11.4	38.19	△17.9

1) 〈表9〉의 年間總保管原價(加重平均値)를 年間保管實績으로 나눈 數値임.
 * 年間保管實績 = 年間保管能力 × 倉庫利用率
 * 年間保管能力 = 100坪 × 坪當 保管能力(4.7屯) × 365日
2) 現行保管料率 (甲地 : 49.33원, 乙地 : 46.54원)

倉庫利用率의 代案別(40%, 50%, 60%, 70%) 100坪 基準 政府糧穀倉庫의 級地別 1日屯當 保管料率을 計算한 結果를 요약하면 〈表10〉과 같다. 倉庫利用率이 40～70%일때, 1日屯當 保管料率은 甲地의 경우 43.72～76.50원, 乙地의 경우 38.19～66.83원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農水産部에서 推算한 政府糧穀倉庫利用率은 1979～1983년 사이에 53.0～82.0%로 年度間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 5個年間의 政府糧穀

倉庫 平均 利用率은 69.0 %였다〈附表 3-3〉. 政府糧穀倉庫의 利用率은 앞으로의 糧穀政策에 좌우되겠지만 점차 政府의 糧穀管理規模가 축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政府糧穀倉庫利用率은 現水準보다 떨어질 展望이다.

政府糧穀倉庫의 利用率이 60 %일 때, 甲地의 1日屯當 保管料는 51.00원으로 現行 49.33원 對比 3.4 %가 높으나 乙地의 1日屯當 保管料率은 44.56원으로 現行 46.54원 對比 4.3 %가 낮은 수준이다. 이때 甲地의 保管料率은 乙地보다 14.5 % 높은 수준이다.

2. 合成樹脂袋 包裝原價

가. 結果의 要約

本調査에 의하면 1983年 基準 合成樹指袋의 屯當 包裝賃은 40 *kg*包裝이 1,621원, 60 *kg*包裝이 1,315원으로 現行對比 각각 38.5 %, 46.6 % 높은 水準이다〈表 11〉.

表11 合成樹脂袋 包裝原價 調査結果 要約

單位 : 원／톤

區 分	本調査結果(A)	'84年度包裝賃(B)	A／B (%)
40 *kg* 包裝	1,621	1,170	138.5
60 *kg* 包裝	1,315	900	146.1

나. 包裝原價 內譯

表12 合成樹脂袋 包裝原價 內譯

單位 : 원 / 톤

費目			40 kg 原單位 1)	40 kg 金額	60 kg 原單位 1)	60 kg 金額
製造原價	直接勞務費	男 (人)	0.1235	1,064.57	0.1024	882.69
		女 (人)	0.0062	31.68	0.0051	26.06
		小 計		1,096.25		908.75
	消耗材料費	실 (kg)	0.0182	54.60	0.0146	43.80
		꼬리표(개)	25	112.50	16.67	75.02
		小 計		167.10		118.82
	經費	減價償却費		67.49		53.03
		修理費		2.85		2.22
		消耗品費		3.55		2.86
		保險料		4.10		3.16
	計 (A)			1,341.34		1,088.84
一般管理費	間接勞務費			99.53		79.45
	圖書印刷費			1.19		1.12
	交通通信費			8.17		6.61
	水道光熱費			2.84		2.27
	租稅公課金			12.00		10.03
	寄附接待費			9.36		7.87
	計 (B)			133.09		107.35
總原價 (A+B)				1,474.43		1,196.19
利潤 (10%)				147.44		119.62
包裝費				1,621.87		1,315.81

1) 톤당 原單位 = 投入量 / 包裝量

附錄 1. 保管原價算出 根基資料

附表 1 - 1 소라단협 100坪當 倉庫新築費 內譯 *

單位 : 원

費 目 名	金 額
工 事 費	35,100,000
官 給 資 材 代	4,256,955
設計費 및 管理費	3,159,540
倉庫周圍石築工事	434,000
許可, 免許稅	150,617
計	43,101,112

* 全南, 여천군의 소라單協에서 1983年度에 實際支拂한 費用임.

附表 1 - 2 政府糧穀保管倉庫의 備品減價償却內譯

(100평 기준)

비 품 명	금 액	산 출 근 기
	(원)	
깔 판	144,000	5,000원 × 80평 × 2개 × 9/10 ÷ 5년
복 포	50,400	280,000원 × 9/10 ÷ 5년
저 울	7,500	50,000원 × 9/10 ÷ 6년
소 화 기	2,700	15,000원 × 2개 × 9/10 ÷ 10년
수분측정기	9,900	55,000원 × 9/10 ÷ 5년
순찰시계	5,940	66,000원 × 9/10 ÷ 10년
선 풍 기	8,438	75,000원 × 9/10 ÷ 8년
점검용체	6,300	35,000원 × 9/10 ÷ 5년
사 다 리	3,600	20,000원 × 1개 × 9/10 ÷ 5년
계	238,778	

附表 1 - 3 民間倉庫(甲地)의 支給利子 再評價內譯

단위 : 원

倉 庫 別	實際支給利子 (A)	總 資 本	借入金[1] 依存度	再 評 價[2] 支給利子(B)	A - B
동방산업	49,986,140	491,418,262	29.3 (%)	14,398,555	35,587,585
안국창고	8,263,999	186,298,917	〃	5,458,558	2,805,441
이화창고	8,368,151	109,149,088	〃	3,198,068	5,170,083
진주창고	8,241,024	195,524,400	〃	5,728,865	2,512,159

1) 1982년도 全國平均 保管業의 借入金依存度
(한국은행 「 1982년도 기업경영분석 」 참조)
2) =總資本×借入金依存度 (29.3 %) × 利子率 (10 %)

附錄 2. 標本倉庫의 施設現況 및 倉庫利用率

附表 2 - 1 標本農協倉庫(甲地)의 施設現況

공판장별	특 급		1 급		2 급		계	
	동수	평 수	동수	평 수	동수	평 수	동수	평 수
청 량 리	2	1,014	1	205			3	1,219
부 산			1	1,018			1	1,018
대 구	1	509					1	509
춘 천*			2	311			2	311
묵 호*			1	100			1	100
청 주*			5	1,000	2	200	7	1,200
대 전	1	510					1	510
전 주*			3	350			3	350
군 산*			3	300	1	100	4	400
광 주	1	500					1	500
목 포*			2	600			2	600
중 앙*			3	805			3	805
계	5	2,533 (33.7)	21	4,689 (62.3)	3	300 (4.0)	29	7,522 (100.0)

*표는 단협임.

附表 2 - 2　標本農協倉庫(乙地)의 施設現況

단협별	특급		1급		2급		계	
	동수	평수	동수	평수	동수	평수	동수	평수
여주			5	500			5	500
삼괴			3	300	3	300	6	600
삼척			2	200			2	200
황지			2	259			2	259
탄부			6	550			6	550
봉양			2	200	1	100	3	300
강경			3	300			3	300
금마			4	400			4	400
기산			3	300			3	300
황일			3	300	1	100	4	400
성수			3	300			3	300
오산			8	800	1	100	9	900
송정	1	510	4	400			5	910
도덕			4	400	1	100	5	500
구례			4	400			4	400
도포			4	400			4	400
소라			5	450	1	100	6	550
외동			4	400			4	400
낙동			9	900			9	900
봉성			2	200			2	200
군위			3	300	1	111	4	411
지수			3	300			3	300
진권			3	300	1	100	4	400
초동			4	400	1	100	5	500
계	1	510	93	9,059	11	1,111	105	10,680

附表 2 - 3　標本民間倉庫의 施設現況

級地	倉庫名	特級		1級		2級		計	
		동수	평수	동수	평수	동수	평수	동수	평수
甲地	진주	1	500					1	500
	안국	1	402					1	402
	이화	1	500					1	500
	동방	2	1,000					2	1,000
	오성					2	602	2	602
	협성			2	201	2	239	4	440
計		5	2,402	2	201	4	841	11	3,444
乙地	역전			1	201	3	488	4	689
	신흥			2	200			2	200
	조기래			2	200			2	200
	천포			1	100			1	100
	하림			1	100			1	100
計				7	801	3	488	10	1,289

附表 2 - 4　標本通運倉庫의 施設現況

級地	倉庫名	特級		1級		2級		計	
		동수	평수	동수	평수	동수	평수	동수	평수
甲地	춘천					3	615	3	615
	청주					4	820	4	820
	여수			1	577			1	577
	마산			3	1,107			3	1,107
計				4	1,684	7	1,435	11	3,119
乙地	의정부					1	205	1	205
	옥천			1	182			1	182
	담양			2	209	1	78	3	287
	곡성			1	100	2	211	3	311
	건천			1	100			1	100
	군북			1	100	1	106	1	100
	창녕			1	103			2	209
計				7	794	5	600	12	1,394

附表 2 - 5 標本民間倉庫의 倉庫利用率, 1983

단위 : 톤

甲地				乙地			
창 고 명	보관능력	보관실적	이용률%	창 고 명	보관능력	보관실적	이용률%
진 주	930,750	569,888	61.2	역 전	1,011,196	822,896	81.4
안 국	748,323	503,905	67.3	신 흥	350,400	334,580	95.5
이 화	930,750	589,962	63.4	조 기 래	350,400	265,755	75.8
동 방	1,861,500	1,081,267	58.1	천 포	175,200	124,050	70.8
오 성	813,001	428,375	52.7	하 림	175,200	173,262	98.9
협 성	674,922	340,765	50.5				
계	5,959,246	3,514,162	59.0	계	2,062,396	1,720,543	83.4

附表 2 - 6 標本農協倉庫(甲地)의 倉庫利用率, 1983

共 販 場 別	保 管 能 力 (A)	保 管 實 績 (B)	利 用 率 (B/A)
	(톤)	(톤)	(%)
청 량 리	2,246,721	1,529,093	68.1
부 산	1,783,536	678,600	38.0
대 구	947,504	363,873	38.4
춘 천*	544,872	306,068	56.2
묵 호*	175,200	25,489	14.5
청 주*	2,022,100	801,708	39.6
대 전	949,365	445,825	47.0
전 주*	613,200	521,784	85.1
군 산*	660,650	387,074	58.6
광 주	930,750	665,486	71.5
목 포*	1,051,200	509,252	48.4
중 앙*	1,410,360	534,751	37.9
計	13,335,458	6,769,003	50.8

*표는 單協임.

附表 2 - 7　標本農協倉庫(乙地)의 倉庫利用率, 1983

단위 : 톤

단 협 별	보관능력(A)	보관실적(B)	이용률(B/A)
여 주	876,000	298,208	34.0 %
삼 괴	930,750	295,639	31.8
삼 척	350,400	199,720	57.0
황 지	453,768	220,800	48.7
탄 부	963,600	838,774	87.0
봉 양	485,540	492,750	101.5
강 경	525,600	388,132	73.8
금 마	700,800	475,968	67.9
기 산	525,600	223,630	42.9
황 일	660,650	716,150	108.4
성 수	525,600	400,035	76.1
오 산	1,536,650	1,169,965	76.1
송 정	1,650,165	1,328,327	80.5
도 덕	835,850	562,720	67.3
구 례	700,800	709,082	101.2
도 포	700,800	518,900	74.0
소 라	923,450	673,582	72.9
외 동	700,800	441,154	63.0
낙 동	1,576,800	1,308,634	83.0
봉 성	350,400	70,605	20.1
군 위	675,506	547,745	81.1
지 수	525,600	370,352	70.5
진 전	660,650	524,263	79.4
초 동	835,850	547,178	65.5
전 체	18,671,539	13,322,313	71.4

附表 2 - 8 標本通運倉庫의 倉庫利用率, 1983

단위 : 톤

甲 地				乙 地			
지 점 명	보관능력	보관실적	이용률%	출장소명	보관능력	보관실적	이용률%
춘 천	830,558	330,013	39.7	의 정 부	276,853	77,600	28.0
청 주	1,107,410	192,971	17.4	옥 천	318,864	220,158	69.0
여 수	1,010,904	460,397	45.5	담 양	471,507	436,087	92.5
마 산	1,939,464	640,877	33.0	곡 성	460,156	460,259	100.0
				건 천	175,200	128,106	73.1
				군 북	175,200	103,965	59.3
				창 녕	323,609	209,683	64.8
계	4,888,336	1,624,258	33.2	계	2,201,389	1,635,858	74.3

附録3. 保管關聯 參考資料

附表3－1 政府糧穀保管倉庫의 保管能力 推移(2級以上)

연 도	동 수	평 수	보 관 능 력	지 수
			千石	
1969	1,404	156	3,665	100.0
1972	1,302	152	3,712	101.3
1974	1,562	192	5,098	139.1
1976	3,512	411	9,114	248.7
1977	4,548	528	11,709	319.5
1978	7,135	785	17,518	478.0
1979	7,444	815	18,496	504.7
1980	7,476	826	19,071	520.4
1981	7,475	831	19,695	537.4
1982	7,499	841	20,190	550.9
1983	7,598	854	20,558	560.9

자료 : 농수산부, 「양곡통계」, 각권
_____, 「농정수첩」, 각권
_____, 「양정자료」, 1983.10.

附表3－2 政府糧穀保管倉庫現況, 1983. 12

級地別	區分 \ 所有者別	政 府	農 協	民 間	通 運
甲 地	동 수 (棟)	5	80	255	31
	평 수 (坪)	2,403	15,103	62,207	7,400
	보관능력 (屯)	12,039	76,946	324,332	33,430
乙 地	동 수 (棟)	12	4,795	2,357	63
	평 수 (坪)	3,030	480,134	273,740	7,665
	보관능력 (屯)	14,001	2,218,512	1,293,297	32,918
計	동 수 (棟)	17	4,875	2,612	94
	평 수 (坪)	5,433	495,237	335,947	15,065
	보관능력 (屯)	26,040	2,295,458	1,617,629	66,348

자료 : 농수산부, 양정국.

附表 3 - 3 年度別 政府糧穀倉庫 利用率 ('83. 12月末 現在)

단위 : %

年度 \ 月別	1	2	3	4	5	6	7	8	9	10	11	12	平均
1979	80.4	74.3	65.8	60.0	50.2	42.7	54.3	53.3	47.5	45.5	83.4	80.1	61.5
1980	76.7	71.2	64.5	57.6	51.9	44.7	47.4	50.9	42.9	87.3	47.8	43.2	53.0
1981	43.8	43.2	43.9	50.4	58.2	60.4	77.6	76.5	73.3	68.5	89.2	94.2	64.9
1982	90.3	88.7	83.9	79.6	72.0	67.9	77.1	71.1	67.3	64.0	81.1	92.1	77.9
1983	89.4	86.1	79.9	76.9	73.0	68.0	80.3	80.0	78.0	74.0	93.0	102.0	82.0

자료 : 농수산부, 양정국.

附錄 4. 合成樹脂袋 包裝原價實測 調査結果

附表 4 - 1 實測包裝量 및 直接勞務費 屯當 原單位 (40kg袋)

工場	實測包裝量[1]	投入人員[2] 男	女	計	屯當原單位 (톤당, 人) 男	女	計
	M/T	人	人	人			
군북	33.1	4		4	0.1208		0.1208
대동	31.5	4		4	0.1270		0.1270
광진	61.3	7	1	8	0.1142	0.0163	0.1305
대림	35.6	4		4	0.1124		0.1124
영신	25.6	3	1	4	0.1172	0.0391	0.1563
화원	43.0	6		6	0.1395		0.1395
고흥	59.7	7	1	8	0.1173	0.0168	0.1340
신태인	70.4	9		9	0.1278		0.1278
부천	70.4	9		9	0.1278		0.1278
평택	54.9	7		7	0.1275		0.1275
平均	48.6	6.0	0.3	6.3	0.1235	0.0062	0.1297

1) 1日 8시간 기준 (1시간 : 50분 기준)
2) 評價人員임.

附表 4 - 2 實測包裝量 및 直接勞務費 屯當 原單位 (60kg袋)

工 場	實測 包裝量[1]	投入人員[2] 男	女	計	原單位(人/톤) 男	女	計
	M/T	人	人	人			
군 북	35.2	4		4	0.1136		0.1136
대 동	36.0	4		4	0.1111		0.1111
광 진	72.0	7	1	8	0.0972	0.0139	0.1111
대 림	41.6	4		4	0.0962		0.0962
영 신	28.8	3	1	4	0.1042	0.0347	0.1389
화 원	47.8	6		6	0.1255		0.1255
고 흥	72.8	7	1	8	0.0962	0.0138	0.1099
신 태 인	84.0	9		9	0.1071		0.1071
부 천	99.2	9		9	0.0907		0.0907
평 택	68.8	7		7	0.1017		0.1017
平 均	58.6	6.0	0.3	6.3	0.1024	0.0051	0.1075

1) 1日8시간 기준(1시간50분 기준)
2) 評價人員임.

附表 4 - 3 消耗材料(실)의 屯當 原單位 實測結果

工 場	3P 40 kg 40 kg當(gr)	1屯當 (kg)	3P 60 kg 60 kg當(gr)	1屯當 (kg)
군 북	0.74	0.0185	0.88	0.0147
대 동	0.74	0.0185	0.88	0.0147
광 진	0.70	0.0175	0.82	0.0137
대 림	0.64	0.016	0.90	0.015
화 원	0.78	0.0195	0.90	0.015
고 흥	0.75	0.0188	0.89	0.0148
신 태 인	0.75	0.0188	0.88	0.0147
平 均	0.7286 gr	0.0182	0.8786	0.0146

* 실 : kg當 3,000원
꼬리표 : 4.5원/개